



서비스 수출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범위의 확대 ¹⁾

서비스 수출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범위의 확대

인도네시아 부가세법상 서비스의 수출은 기본적으로 영세율(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율 적용이 되는 서비스의 수출의 조건은 재무부(MoF)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서비스의 수출은 사급용역(toll manufacturing)과 특정 건설서비스에 제한을 되었으며, 아래에서 설명하는 신규규정을 통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서비스의 수출의 범위가 개정되었습니다.

재무부는 2019년 3월 29일자로 재무부 규정 No.32/PMK.010/2019 (PMK-32)을 발표하였으며, 동 규정은 서비스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발표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PMK-32는 기존의 재무부 규정 No.70/PMK.03/2010 (PMK-70) 및 개정규정인 No.30/PMK.03/2011 (PMK-30)을 폐지합니다. PMK-32는 내국 서비스 사업자의 포괄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며 서비스의 수출을 장려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수출(Export)의 정의

PMK-32는 수출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과세지역(Customs Area) 내에서 창출되는 서비스로서 과세지역외에서 서비스의 수취자에 의해 이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가세 영세율에 대한 국제적으로는 통용되는 부가세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PMK-32는 DGT Circular Letter No.SE-49/PJ/2011 (PMK-70(PMK-30으로 개정됨)의 시행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즉, 서비스가 인도네시아 과세지역 외에서 창출되고 이용된 경우,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부가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범위

PMK-32는 아래의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과세지역 외에서 소비되는 동산과 관련한 하기의 서비스:
 - a. 사급용역(toll manufacturing services);
 - b. 유지 보수 서비스(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
 - c. 수출 목적의 재화에 대한 운송 서비스 - **신설**
2. 과세지역 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건설 컨설팅
3. 산출물이 과세지역 외에서 소비되는 기타 서비스로서 아래의 방법으로 전달되는 서비스(서비스 수출 수취자의 요청에 근거):
 - a. 우편 또는 전자적 수단과 같은 방법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
 - b. 과세지역 밖에서 이용(접근)되도록 권리가 제공되는 형태이러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정보 기술 서비스; - **신설**
 - b. 인터커넥션, 위성 및 데이터 연결 서비스; - **신설**
 - c. 연구 및 개발 서비스; - **신설**
 - d. 국제 항행 활동을 위한 항공기 및 선박의 임대서비스; - **신설**
 - e. 수출을 목적으로 재화의 조달을 위해 내국 공급자를 확보하는 형태의 트레이딩 서비스; - **신설**
 - f. 하기 형태의 컨설팅 서비스:
 - 경영 관리 서비스, - **신설**
 - 법률 서비스, - **신설**
 - 인테리어 및 건축 디자인 서비스, - **신설**
 - 인적 자원 서비스, - **신설**
 - 엔지니어링 서비스, - **신설**
 - 마케팅 서비스, - **신설**
 - 회계 서비스, - **신설**
 - 회계감사 서비스, - **신설**
 - 세무 서비스. - **신설**

문서화 요구조건

서비스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위하여는 하기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내국 서비스 제공자(부가세 과세대상 기업 또는 PKP)와 국외 소비자간 서면계약서에 서비스의 유형, 세부사항 및 금액 명기되어야 함;
2. 국외 소비자가 내국 PKP에 서비스 대가를 지급한 증빙 구비.

상기의 조건을 충족하기 못하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과세지역 내에서 소비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서 10%의 부가세가 징수됩니다.

세금계산서 등 이행 요구조건

과세의 기준시점은 기존의 규정과 동일하며, 즉, 서비스의 대가가 수익 또는 채권으로 인식되는 시점이 과세 기준 시점이 됩니다.

또한, 기존 규정과 동일하게 PKP는 인보이스(faktur penjualan)와 함께 특정 부가세 세금계산서 (서비스 수출 신고서(Pemberitahuan Ekspor Jasa Kena Pajak/ PEJKP))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급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PKP는 현행규정에 따라 재화의 수출신고서(PEB)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PKP는 월별 부가세 신고서에 서비스의 수출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수출과 관련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가능합니다.

결론

PMK-32의 개정은 국외에 서비스를 수출하는 내국 서비스 제공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네시아에 컨설팅 자원을 유치하거나 인도네시아에 지역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한국데스크(KBD)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정태훈 회계사

Email: taehun.jung@id.pwc.com

박인혁 회계사

Email : inhyuk.park@id.pwc.com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id.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id.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id.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id.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id.pwc.com	Raemon Utama raemon.utama@id.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id.pwc.com	Hanna Nggelan hanna.nggelan@id.pwc.com	Runi Tusita runi.tusita@id.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id.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id.pwc.com	Ryosuke R Seto ryosuke.r.seto@id.pwc.com
Ali Widodo ali.widodo@id.pwc.com	Hendra Lie hendra.lie@id.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id.pwc.com
Amit Sharma amit.xz.sharma@id.pwc.com	Hisni Jesica hisni.jesica@id.pwc.com	Soeryo Adjie soeryo.adjie@id.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id.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id.pwc.com	Sujadi Lee sujadi.lee@id.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id.pwc.com	Laksmi Djuwita laksmi.djuwita@id.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id.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id.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id.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id.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id.pwc.com	Mardianto mardianto.mardianto@id.pwc.com	Tim Watson tim.robert.watson@id.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id.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id.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id.pwc.com
Dany Karim dany.karim@id.pwc.com	Mohamad Hendriana mohamad.hendriana@id.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id.pwc.com
Deny Unardi deny.unardi@id.pwc.com	Omar Abdulkadir omar.abdulkadir@id.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id.pwc.com
Engeline Siagian engeline.siagian@id.pwc.com	Otto Sumaryoto otto.sumaryoto@id.pwc.com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id.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id.pwc.com	Parluhutan Simbolon parluhutan.simbolon@id.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id.pwc.com

www.pwc.com/id

 PwC Indonesia

 @PwC_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contact.us@id.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9 PT Prima Wahana Carak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